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٧-۱	기	관	의	장	
선					
람					

정기 제371호 2017. 3. 2(목)

입 법 예 고

장수군 공고 제	2017 -	- 126호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 입법예고 ········ - 131호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 - 134호 장수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입법예고 ····································	_
고	시		
장수군 고시 제	2017 -	- 2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8 19 20

장 수 군 (편집 기획조정실 ☎ 063-350-2228)

장수군 공고 제 2017- 126호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 입법예고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장수군수

- □ 자치법규명
 -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 □ 개정이유
 - 행정 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한 구비 서류 제출 을 최소화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사업자 등록증, 건축물 대장 첨부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 동이용시스템 이용하여 확인(별지 제1호 서식)

나. 공장등록증 첨부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공장등록시스템 이용하여 확 인 (별지 제6호, 제7호 서식)

□ 참고사항

- 입법예고: 군보게재 익일부터 20일간
- 관련공문
 - 자치 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 [민원과-11136(2017.02.03.)]

□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 한내 붙임서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 · 우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건설경제과장)
 - · 팩 스: 063-350-2327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경제과 지역경제팀 350-2243에 문의바랍니다.
-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2.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 일부개정

[별지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화번호:

자치법규안	찬 반 여 부		의	<u></u> 견	비고
내용	찬성	반대	7	건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 일부개정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

[별지 제1호서식]

의국인투지
외국인 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 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투자내용 선 고 일 선고 된 사업 외국인투자금액 및 금 원(USD: 상당) %
외국인투자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일 신고 된 사 업 외국인투자내용 의국인투자금액 및 금 원(USD: 상당) %
신 고 일 신 고 된 사 업 외국인투자금액 및 금 워(USD: 상당) %
외국인투자내용 선고 된 사 업 외국인투자금액 및 금 워(USD: 상당) %
기가 보기 가 하는 기계
H육 H 원(USI): 상당) %
투 자 방 법 현 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 분 □신규 □증자 사업개시예정일
소재지
시설입지 내역 면 적 총부지면적: ㎡, 시설면적: ㎡(구입가격: 원/평)
업 종 종 업 원 수
착공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보조사업 담보방법
보조금 신청액 금 원(USD: 상당)
장수군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업입지 보조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없음
신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참조), 투자실행이행 각서 각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
3. 산업단지등의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4.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건축물대장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별기	디 제6호서식]				
		공장시설(이전보조	금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신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청				(법인등록번호)	
인	대표자 주소			전 화	
	(법인은 소재지)			FAX	
	기존 소재지				
_	공장 이전지			A)고/H크미호)	
공	'장설립(준공)일	코키 1 시	E 2) 1) (d/c) (0	업종(분류번호)	()
		중상시설· 신규취득공장시설	투자내역(단위	1 · 백만원) 기존공장 이전/	11성
	과 목	신파워국중성시설	취득금액	기본당성 이전/	기설 공장시설가액
	4 4	취득금액		감가삼각누계액 ②	
	<u></u> 합 계		1		1 - 2
	<u>입</u> 게 건 축 물				
	<u> </u>				
	부속시설				
	1 1 1 2	 보	 조 금 신	 청	
공장	상시설금액 :	백만	원 이	전보조금 :	백만원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	제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시설이전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1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	인):	(서명	를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				
					수수료
[구	비서류]				없 음
〈민	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	제13호서식 참조) 1부	_		
2	공장시설의 이전시	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담	당공무원 확인사	₺ 〉			
1.	공장등록증				
		임리아 과려차서 「저	가저브버 :	레96조제1하에 따르 ź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u> </u>	학 한 생생 생 구 중 중 6	1중으로 확인이 가능인
ダブ	에 한함)하는 것이	<u> 궁취입니다.</u>			

- 6 -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군

[별지 제7호서식]

	フス	L기서트키ㅂ	171017	. 시원 2]		
		·시설투자비	<u> </u>		1		
상호 또는 '	경징			등록번호			
신 대표자 성	명		_	1월일			
청	,			록번호)			
인 대표자 주			전	화			
(법인은 소재	내지)		F.	AX			
공장 소재지		기스스테기어		되니 기십			
대 상 업 종 공장설립(준공)		기술수반사업		첨단사업 -류번호)	()
6/6/担任(元6)	크	공장시설투자내9			(
구 분		취득금액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비	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	7	
<u></u> 합 계				'			
건 축 물							
기 계 장 치							
부속시설							
보조금신청액			원				
장 수 군 수 귀히	_	년 월](또는 대리인) :	텔 일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민원인 제출서휴	$\langle \dot{z} \rangle$						
1. 사업계획서(별	지 제13호서	니 참조) 1부					
2. 공장시설의 투	자금액을 증명	j할 수 있는 서류 1	부				
(담당공무원 확인	<u>]</u> 사항〉						
l. 공장등록증							
본인은 이 건 않	1 미 쿼 미 이 지나	년하여 「전자정부 ¹	버 계96조	계1하세 때	근 체저저는	101.77	도이 요.으
			_		<u>른 행정정보</u> 도이오요ㅋ		
		·당공무원 확인사힝	<u>글 확인(</u>	생성성보 중	농의공으도	작인(기 가능만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농의합니	<u> 나.</u>					
		신청인(또는 대i	리인) :	(서명 <u>-</u>	E는 인)		

장수군 공고 제 2017 - 131호

이 조례는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7일

장수군수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시행일 2016.12.30.)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군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

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삭제함 (별표 1)

- 1) 화재증명원 : 800원 ⇒ 삭제
- 3. 입법예고기간 : 2017. 2. 27 ~ 2017. 3. 19.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년 3월 19일까지 장수군수에게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3)의 경우에는 [별 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1)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재무과장)
- 2) 팩 스: 063-350-2275
- 3)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자치법규 · 의견달기
- 4) 직접방문
-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5.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재무과 세입팀(전화 063-350-2287)에 문의바랍니다.

[별지 서식1]

제371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화번호:

자치법규안			0]	<u></u> 견	비고
내용			<u>ህ</u>	1 12	

조례 호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0. 기타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통합지원본부 편제 주요임무 (제5조 관련)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10. 기타			
가. 공부의 동·초본 교부	1건	500	
나. 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	1건	500	
다. 사실증명 확인	1건	50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수수료 액	비고
10. 기 타			
가. 공부의 등·초본 교부	1건	500	
나.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	1건	500	
다. 사실증명 확인	1건	500	
라. 화재증명원	<u>1건</u>	800	

[별표 1]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수수료 액	비 고
<u>10.</u> 기 타			
가.공부의 등·초본 교부	1건	500	
나.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	1건	500	
다. 사실증명 확인	1건	500	
<u>〈삭 제〉</u>			

장수군 공고 제 2017 - 134 호

이 조례는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입법예고

장수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재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 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장수군수

1. 제정이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되던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지원범위(안 제1조, 제2조)

- 나.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출연금의 지급 방법(안 제3조, 제4조) 다. 결산서 제출(안 제5조)
- 3. 입법예고기간 : 2017. 3. 3 ~ 2017. 3. 23.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년 3월 23일까지 장수군수에게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3)의 경우에는 [별 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1)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기획조정실장)
- 2) 팩 스: 063-350-2280
- 3)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자치법규 · 의견달기
- 4) 직접방문
-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다.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5.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기획조정실 기획팀(전화 063-350-2211)에 문의바랍니다. [별지서식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u></u> 견	비고
	찬성	반대	의 선	٦ ا	

조례 호

장수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요청액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이를 재단에 통보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고시 제2017 - 22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조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에 의거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2월 일

장수군수

□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 내용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명 칭	장수군수	
및 주소	주 소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2. 사업시행의 목적 및 기본방향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공중보건위생 향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위 치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일원	
및 면적	면 적(km²)	0.51	
4. 설치하고자하는 시설의	종 류	하수관거	
종류 및 명칭	명 칭	장수지구(천천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5.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일원		
6. 사업시행기간	2016. ~ 2018.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해당사항 없음"		

장수군 고시 제2017 - 2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1일

장수군수

1. 하천의 명칭: 금강(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유)공감이엔지 대표 백영옥 나. 주 소 : 장수군 천천면 용신길 1-42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소수력발전소 방수로 설치

나. 개 요 : 방수로 굴착 매설(흄관 D1200m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장수군 천천면 용광리 893번지

나. 면 적 : 임시 90m², 영구 27m²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2. 2. 19일 까지

장수군 고시 제 2017- 24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 고시

「지방자치법」제15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에 장수군이 참여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장수군수

- □ 참여목적 : 전국 군(郡)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농어촌지역 현안사항 해결, 경쟁력 강화, 균형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 여 전국 농어촌지역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전국 농어촌지 역 군수협의회」참여
- □ 참여자치단체 현황: 72개 군
 - 강화군, 옹진군, 양평군, 연천군, 가평군,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

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봉화군, 울릉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협의회의 구성

○ 대 상: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전국 군단위 기초자치단체장

○ 조직형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 부 담 금 : 2백만원/년(농어촌 관련 정책 발굴, 농어촌간 네트워크 구축, 농어촌지역정책포럼 개최, 책자, 홍보물 제작 등 관 련 제비용

□ 주요 공동협력사업 내용

- 농어촌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정부와 관계기관 건의 및 대책 요구
- 농어촌지역의 현안과제 및 해결방안 도출
-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시책수립, 연계 협력, 공동 대응
- 농어촌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정보공유. 모범사례 전파. 상호교류
- 농어촌 발전을 위한 농어촌지역 정책 포럼 개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협의회는 농어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군(郡) 간에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 경쟁력 강화, 균형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라 한다. (이하 "협의회"라 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되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은 총회 의결로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하 "관계지방자치단체"라 한다)

②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등) ①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②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 · 의결사항 등 각 종 자료를 보관 · 관리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5조(조직) ① 협의회에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 사무총장 1명, 감사 2명

을 둔다.

- ② 전직 회장은 고문으로 한다.
- ③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④ 사무총장 및 감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⑥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6조(임기) ① 회장 · 부회장 · 사무총장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회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회장과 부회장이 함께 유고시에는 사무총장이 회장이나 부회장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또는 직무에 복귀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되어 새로운 회장이나 부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도별 소위원회)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분포된 경우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 ② 소위원회 구성 권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정한다.
- ③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 ④ 소위원회 위원장, 간사, 서기의 선출·임기·역할 및 의결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과 같은 수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 회장이 위촉한다.

- 1.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 2.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장
- 3. 관련 공공단체의 장
- 4.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 5. 지역사회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 ③ 자문위원은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여 협의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종료 전에도 협의회 의결에 의해 위촉이 해제될 수 있다.

제3장 기능 및 회의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 조정 · 처리한다.

- 1. 농어촌지역 보유자원의 조사, 보존, 이용, 개발에 관한 사항
- 2. 농어촌지역의 공통 행정수요 파악 및 충족방안에 관한 사항
- 3. 농어촌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 4.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시책 수립, 연계 협력, 공동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주요 분야】

지방자치, 지방분권, 균형발전, 지방행정체제 개편, 농촌선거구 조정, 재정자립, 국도비 지원, 사회 인프라 확충, 규제 완화, 투자유치 지원,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FTA 극복방안, 농어업 경영안정,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특산물 생산·가공·유통지원 및 개선, 축제 및 관광 활성

- 화, 출산 · 육아 · 교육지원, 노인복지, 기타 농어촌지역 발전에 필요한 분야
 - 5. 농어촌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정보·노하우 공유, 모범사례 전파, 상호교류에 관한 사항
 - 6. 농어촌·농어업·농어업인에 대한 제도와 정책 등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제기하는 건의, 대책요구, 기타 대응에 관한 사항
 - 7. 협의회의 구성 ·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8. 기타 협의회의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협의·의결)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 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조정을 거친 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 ② 협의안건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군수가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참석자는 회의에서 토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 개정 2015 4 14〉
- ④ 회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장은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 ⑤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5일 이내에 협의회 개최결과를 관계 지방자치 단체에 통보하고 의결사항 등 각종 회의관련 자료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 다

제12조(사무처리)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1명씩 둔다.

- ② 간사와 서기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 관련업무 담당부서 실·과장 및 실무담당 주사로 한다.
- ③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을수 있다.

제15조(미합의 사항의 조정 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해도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행정협의회 협의사항 조정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협의결과 준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결정과 제15조의 규

정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조정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실무위원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 업무담당 실·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정 안건에 따라 관련업무 담당 실·과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가 겸직하고, 실무위원회 간사는 협의회 서기가 겸직한다.
- ④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및 기타

제18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 액은 사항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회비 및 분담금)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회비와 분담금 등을 납부할 수 있다.

② 회비와 분담금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0조(회계) ① 회비 및 분담금 등의 경리 상황은 협의회 간사가 매년 정기회에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수당지급)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제22조(사무의 인계) 회장은 임기만료 후 30일 이내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기록과 경비 및 부담금의 잔액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체를 차기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3조(규약개정)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보칙) 이 규약 이외에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군보발행안내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보게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게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게재 의뢰 방법 :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